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운영·관리 기준(안)

2021.6월



관광산업전략팀

- 목 차 -

1. 운영·관리 기준 개요

가. 목적	_____	1
나. 적용범위	_____	1
다. 용어정리	_____	1
라. 타 규정과의 관계	_____	2

2. 추진체계별 주요 수행업무 및 준수사항

가. 한국관광공사	_____	2
나. 수혜기업	_____	2
다. 서비스 제공기업	_____	2
라. 운영·자문위원회	_____	3
마. 평가단	_____	3
바. 제반서류 관리	_____	3
사. 기타사항	_____	3

3. 추진 단계별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_____	4
나. 수혜기업 신청 및 선정	_____	4
다. 서비스 제공기업 신청 및 선정	_____	6
라. 협약체결 및 해약	_____	7
마. 지원금 사용 및 정산	_____	8
바.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_____	13

별첨1. 별지서식

_____	15
-------	----

1. 운영·관리 기준 개요

- 가. (목적)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하“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 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 나. (적용범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업무,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다. (용어 정리) 운영·관리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관리기관) 한국관광공사이며, 사업 운영계획 수립, 운영·관리 기준 제·개정,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 선정·관리, 사업비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
 - (수혜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여행사로 디지털 전환 수행 과제를 추진하는 기업.
 - (서비스 제공기업) 관리기관이 일정한 자격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수혜기업에게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하“서비스 제공기업”이라 한다).
 -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관리 기준 제·개정, 부정행위 제재 및 중재 등 사업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위원회.
 - (평가단)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을 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선정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디지털 전환 지원 분야 및 프로그램) “분야”란 고객, 상품, 채널, 기술 및 인프라, 운영 및 프로세스, 디지털 전략 및 리더십의 6가지를 말하고, “프로그램”이란 여행사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고객 및 경험관리 기반구축, 데이터 역량 기반 강화, 디지털 기술 기반 상품·콘텐츠 개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구축, 디지털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인프라 도입 등 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제를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분류한 것임.
 - (국고보조금)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서 관리기관이 수혜기업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 (최종성과물) 결과보고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의 결과물.
 - (특수관계 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 라. (타규정과과의 관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관리 기준에 따른다.

2. 추진체계별 주요 수행업무 및 준수사항

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하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계획 및 운영·관리 기준 수립
- 운영·관리 기준 제·개정
- 협약, 평가, 사업비 집행 등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총괄 지도·감독
- 사업비의 총괄관리
-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 신청접수, 선정
- 신청자격 및 제한 해당 여부 검토
- 수혜기업 협약체결 및 국고보조금 집행
- 수혜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과업의 대금지급 등 관리
-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의 사업 최종성과물 총괄 검토·점검
- 운영·자문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의 이의제기 등 중재업무 처리·결과보고
-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성과분석 등 후속관리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나. (수혜기업) 수혜기업은 하기 사항을 준수하여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관리 기준의 숙지와 준수
- 사업 계획서에 따른 성실한 사업추진 및 사업목표 달성
- 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
- 사업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 하는 사항과 자료제출 요구 등에 협조

다. (서비스 제공기업) 서비스 제공기업은 하기 사항에 따라 지원 분야 및 프로그램에 맞게 수혜기업의 요청에 의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운영·관리 기준의 숙지와 준수
- 공정하고 투명한 과업 수행, 정산 및 회계 처리

- 프로그램 지원내용에 의거한 성실한 서비스 이행 및 성과창출
- 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
- 사업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 하는 사항과 자료제출 요구 등에 협조

라.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가 등 5인~7인으로 구성·운영 하며, 역할은 하기와 같다.

- 동 운영·관리 기준의 개정에 대한 의결
- 관리기관이 검토한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간의 중재안에 대한 최종 의결
- 관리기관이 검토한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간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한 심의
- 기타 사업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석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이 제출한 서면으로 출석과 표결에 갈음할 수 있음
- 운영·자문위원회는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

마. (평가단)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의 선정·성과 평가를 위해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역할은 하기와 같다.

- 수혜기업 선정·성과 평가는 5인~7인으로 구성, 서비스 제공기업은 2인~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단, 관리기관은 지원기업 수나 지원금액 규모 등 상황에 따라 평가단의 인력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운영·자문위원의 구성원은 수혜기업 선정·성과 평가에 참여가 불가하다.
- 선정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를 활용하여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 평가·선정
- 성과평가표(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를 활용하여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 성과평가

바. (제반서류 관리) 관리기관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바, 사업취지에 어긋남이 없는 한에서 수기로 작업 및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 일체는 사후 데이터 축적을 위해 규정에 의거 보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 (기타사항)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은 디지털 전환 지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사전 관리기관의 승인을 획득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추진 단계별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사업계획 수립)** 관리기관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시행 및 운영 계획을 하기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국고보조금의 교부 상황에 따라 사업실시 여부는 변경될 수도 있다.
 - 사업 규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 지원방법 및 절차
 - 운영·관리 기준
 -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 모집·평가·선정·관리 방안
 -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 간 중재업무 처리방안
 - 디지털 전환 과제 수행, 대금지급, 관리방안 등 수립
 - 부정수급 방지 등 관리방안 수립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사업 공고)**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 규모, 지원 대상 등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공고하여 참여를 확대한다.

나. 수혜기업 신청 및 선정

- **(신청 자격)**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로, 공고일 기준 여행업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청 제한)**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시에는 당해 연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법인기업·법인기업 대표자·개인기업 대표자 중 1건이라도 체납시 신청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당해 연도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관광 액셀러레이팅 사업, 관광기업 혁신마우처 등 사업비 제공이 수반되는 관리기관의 유사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신청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모집 공고에 따른다.

- (신청서의 제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하기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 유형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되, 단, 최종선정에 따른 지원유형은 유형별 1개로 제한한다.
 - 수혜기업 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
 - 수혜기업 사업수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계획서”라 한다)
 - 중소기업 확인서
 - 관광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
 -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법인 및 대표자)
 -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 기타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 (선정 평가) 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요건 검토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하기와 같이 평가한다.
 - 요건 검토 통과 기업은 평가단에서 “수혜기업 선정평가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주도형은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선정기업 수의 1.5배수를 선정한 후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체험형은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만을 진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 통과대상의 배수는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수혜기업 평가와 관련하여 그 외의 사항은 사업모집 공고에 따른다.
 - 하기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요건 검토에서 제외 한다.
 - 수혜기업 신청 제한에 해당하는 기업
 - 자료제출 및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기업
 -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으로서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 및 대표자
- (기업 선정) 평가단은 하기 사항을 기준으로 기업을 선정한다.
 -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 기업을 선정한다. 평균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점수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한다.
 - 운영사무국은 선정 결과를 관리기관에 공유하고, 관리기관은 선정 결과를 수혜기업에게 통보한다.
 - 수혜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그 외의 사항은 사업모집 공고를 따른다.

- **(기업 관리)** 관리기관은 선정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사항의 교육 및 자격 취소 등의 제재조치,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선정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협약기간 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수혜기업은 청렴교육 등 관리기관이 주관 하는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수혜기업이 ‘참여제한 요건’에 근거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취하고 기 지원한 정부지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참여제한 세부 요건 ‘지원금 사용 및 정산’의 ‘참여 제한 요건’ 참조)
 - 관리기관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수혜기업 중 우수성과 기업을 선발하고 추가 과제수행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 서비스 제공기업 신청 및 선정

- **(기업 모집)** 관리 기관은 하기의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기업을 모집한다.
 - 관리기관은 신청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신청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업을 모집해야 한다.
 - 관리기관은 지원 프로그램별로 서비스 제공기업을 모집한다.
- **(신청 자격)**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기업(개인·법인사업자), 학교, 연구소로 유사과제 실적 등 모집 기준에 따른 기업·기관
- **(신청 제한)**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사항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기관)은 당해 연도 서비스 제공기업이 될 수 없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재중인 기업(기관)
 - 휴·폐업중인 기업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기관)(법인 및 대표자)
 - 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이 불가능한 기업(기관)
 -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수혜기업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하부조직 포함) 등
- **(선정평가)** 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요건 검토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하기와 같이 평가한다.
 - 서비스 제공기업은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 60점 이상 득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등록한다.
 - 서비스 제공기업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은 사업모집 공고를 따른다.

- **(서비스 제공기업 선정)** 관리기관은 서비스 제공기업 선정 시에 하기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서비스 제공기업의 서비스 수행 전문성
 - 유사서비스 수행실적 등 수행역량
 - 서비스 제공기업의 인력규모의 적정성
 - 서비스 제공기업의 재무 안정성 등
- **(서비스 제공기업 관리)** 관리기관은 선정된 서비스 제공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사항의 교육 및 자격 취소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선정된 서비스 제공기업을 대상으로 협약기간 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기업은 청렴교육 등 관리기관이 주관 하는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서비스 제공기업이 ‘참여제한 요건’에 근거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취하고 기 수입한 정부지원금 및 기업분담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참여제한 세부 요건 마.‘지원금 사용 및 정산’의 ‘참여 제한 요건’ 참조)
 - 서비스 제공기업이 제출한 최종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수혜기업에 귀속된다.
 - 선정된 서비스 제공기업이 규정된 신청자격을 상실하거나 선정 이후라도 신청자격이 없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서비스 제공기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업으로부터 정부지원금 및 기업분담금을 반환받을 때에는 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
 - 관리기관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기업 상위 20%는 ‘최·우수’ 기업으로 분류하고, 하위 20%는 평가단의 검토를 통해 불성실 정도를 판단 후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재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기업은 관리기관이 정한 서비스 제공기업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관리)** 관리기관은 디지털 전환 지원 서비스 분야, 프로그램을 하기와 같이 수혜기관 대상 공유 및 제한할 수 있다.
 -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기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해당 프로그램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기업은 지원 서비스를 등록함에 있어 관리기관이 지정한 서비스 등록기간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라. 협약체결 및 해약

- **(협약 체결)** 관리기관은 하기와 같이 수혜기업과 협약을 체결 수 있다.

- 관리기관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추진협약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수혜기업과 협약 체결한다. 다만, 하기의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기관이 제시한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서 및 요청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수혜기업이 허위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협약서 등을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수혜기업이 제14조의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협약체결 전 수혜기업이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계획의 이행을 포기한 경우
- 협약체결 전까지 수혜기업은 별도 제재 없이 사업 참가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수혜기업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 및 정산’의 마.‘참여제한 요건’에 따라 제재한다.
- (협약 해약) 관리기관은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혜기업과의 협약을 해약하고 제재조치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수혜기업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허위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협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수혜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운영·관리 기준 또는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과 점검·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운영·관리 기준 또는 협약서가 정하는 기준과 달리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업비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공고문 또는 운영·관리 기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수혜기업에게 휴·폐업·인수·합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관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마. 지원금 사용 및 정산

- (자금 지원) 관리기관은 수혜기업과 하기의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수혜기업과 체결한 협약서에 표기된 총액만큼의 디지털 전환 지원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 금액은 당해년도 지원 사업 모집공고에 표시된

한도를 따른다.

- 국고보조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예산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수혜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서비스 제공기업은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을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금의 사용)**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선정 수혜기업은 하기 사항에 의거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선정 수혜기업은 지원 분야의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업을 선택(공사 제공 리스트 활용) 또는 수혜기업 자율적 서비스 제공기업을 선정하여 계약체결 후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수혜기업 자율적 서비스 제공기업 선정은 정해진 기간(정기/수시)에 관리기관의 승인을 획득한 기업에 한하여 가능하다.
 - 수혜기업·서비스 제공기업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사업수행 표준계약서”(별지 제12호 서식)를 통해 양자 계약으로 체결한다. 단,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은 계약체결 전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체결된 계약서는 운영사무국과 관리기관에 필히 제출해야 한다.
 -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수행은 관리기관의 승인을 획득한 서비스 제공기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수혜기업은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 지원 자금은 타 기업에 양도할 수 없다.
 - 수혜기업이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공급가액이 지원 자금보다 큰 경우, 서비스 제공기업의 사전 동의 등을 통해 초과금액은 수혜기업이 부담한다.
 - 제공되는 서비스가 해당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만 지원 자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사업비 세목정의 및 집행 기준은 외주용역비와 홍보비로 한정하며, 집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외주용역비는 수혜기업에서 선정한 수행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비에 해당하며, 디지털 전환 수행과제와 관계없는 용역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능함. 단 외부용역비 중 홍보비의 경우 하기의 기준을 따름.
 - 홍보비는 지원유형별로 집행 한도(체험형 750만원, 주도형 1,500만원 한도)가

있으며, 홍보비 집행 항목은 광고(지면, 옥외, 온라인광고 등) 게재비, 리플렛 제작 등으로 기타 광고비의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이 필요함.

- **(계약의 해지)** 수혜기업은 하기 사항에 관련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혜기업이 하기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점에 상관없이 해지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기업의 전문 인력, 재무상태 등 경영상 중요한 변화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서비스 제공기업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기업 선정이 취소되었거나 서비스 제공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 상기의 경우를 제외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계약의 해지는 해지비용 산정을 포함하여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 간 협의 후, 관리기관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해지 승인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계약해지를 승인받은 경우, 통보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일 14일 이내에, 수혜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기업은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된 해지 비용을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수혜기업이 해지 비용 지급 및 반환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지원금 정산)** 서비스 제공기업은 수혜기업에 서비스를 제공을 완료하고 지원금을 정산받기 위해 하기 사항에 의거하여 정산을 진행한다.
 - 서비스 제공기업은 관리기관에게 수행 결과보고서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기업은 계약체결 관리기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분야별 프로그램 내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서비스별 세부 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 간의 과업에 대한 계약서
 - (전자)(세금)계산서 및 인보이스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 수혜기업이 서비스 제공기업에게 송금한 부가세(계약금) 입금 확인증
 - 기타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 서비스 제공기업은 서비스 종료 후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점검을 통하여 승인·감액·지원여부 등의 정산결과를 결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 수혜기업은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점검결과에 따라 결정된 서비스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입금해야하며 관리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정산 처리한다.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양식은 관리기관이 정한 별도 양식에 따른다.
- 서비스 제공기업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공지의 세부 정산일정 및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산대금 집행) 관리기관은 하기 사항에 의거하여 정산대금을 집행한다.

-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지원금 산정, 관리, 사용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사업자는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한 회계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일체를 검토한 후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을 득한 서류에 한하여 그 원본을 관리기관에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목적 외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대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신청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금액으로 감액 조정하거나 해당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원본서류 도착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 기업에 정산 비용을 지급한다.

○ (지원금 잔액처리)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지원금은 전액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액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차기 사업 참여 시 아래 사항에 해당 하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폐업 등 수혜기업에서 불가항력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업 중단, 사업비의 집행중지, 사업비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잔액규모	제재 조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협약액의 30% 초과	차년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참여금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협약액의 15% 초과~30% 이하	차년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서면 심사 시 5점 감점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협약액의 15% 이하	제재조치 없음

○ (참여 제한) 관리기관은 수혜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기업이 다음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분	제한 사유	제한기간	사업비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3년 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수혜기업에 부당알선, 고의적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였거나, 수혜기업에 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년 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지원금 정산금액이 서비스 수행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횡령, 편취, 유용, 타목적 사용 등)	3년 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3년 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년 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서비스 제공 기업	<p>최종 제출된 수행결과물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혜기업과 담합을 통해 서비스를 부정하게 제공하고 지원 정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혜기업에게 환급한 경우 2. 서비스 수행결과물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한 경우 3. 서비스 제공기업에서 보유한 기존 결과물을 과도하게 재활용하거나 재가공하여 제출한 경우 4. 수혜기업의 기존 결과물을 서비스 결과물로 재가공하여 정산 받은 경우 5. 공공기관 등 외부기업 자료가 정확한 출처없이 과도하게 표절된 경우 6. 수혜기업과의 계약서 및 동기가 필요한 결과물 등을 허위로 작성된 경우 7. 서비스 수행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관리기관 및 수혜기업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재하청한 경우 9. 선정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분야별 프로그램과 무관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10.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물을 제공한 경우 11.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한 수행을 한 경우 	3년 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년 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관리기관 및 수혜기업에 부당한 청탁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업에 선정되거나 서비스를 수입한 경우	2년 이내	-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관리 기준 및 협약위반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보받고 불이행한 경우	1년 이내	-
	수혜기업 리스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수혜기업에게 과도한 영업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	-
	법령에 따른 중앙부처 관련규정 및 운영·관리 기준, 공고 등을 위반한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
수혜 기업	<p>서비스 제공기업과의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디지털 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정산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지원 정산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 환급받은 경우 2. 수혜기업의 기존 결과물을 서비스 결과물로 서비스 제공기업에게 제공한 경우 	3년 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3. 관리기관 동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재하청하여 의뢰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횡령, 편취, 유용, 타목적 사용 등)	3년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3년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년이내	해당사업비 환수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디지털 전환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2년이내	사업비전액 환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운영 관리기관에 부당한 청탁을 통해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년이내	사업비전액 환수
관리기관으로부터의 사업수행 결과보고 및 자료요구 등에 대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이내	-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운영·관리 기준 및 협약위반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보받고 불이행한 경우	1년이내	-
법령에 따른 중앙부처 관련규정 및 운영·관리 기준, 공고 등을 위반한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	1년이내	-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지원금 미소진 시 1.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협약액의 30% 초과: 차년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참여금지 2.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협약액의 15% 초과~30% 이하: 차년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서면 심사 시 5점 감점 3.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 협약액의 15% 이하: 제재조치 없음	1년 이내	-

- (부정부당행위 접수) 관리기관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지원금 사용관련 부정부당행위에 대해 소정의 접수처를 운영하며, 접수 이후 절차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 (성과 및 예산관리) 관리기관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수혜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자금 집행을 독려해야 하며, 국고보조금 집행이 부진한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성과 평가)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은 관리기관에 성과평가를 위해 하기와 같이 서류 제출 및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수혜기업은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성과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를 활용한 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결과와 수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기업은 해당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 관리기관은 수혜기업의 최종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가 부진한 기업은 사업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재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 수혜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은 성과평가 및 분석을 위한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표준서식)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 간의 사업수행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수행 결과보고서는 관리기관이 정한 별도 양식으로 활용한다.
- (비밀유지 의무) 관리기관, 서비스 제공기업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수혜기업의 비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운영·관리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6월 ○○일)
2. (공고 방법) 이 운영·관리 기준은 관리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1. [별지 제1호] : 여행업 관련 법령
2. [별지 제2호 서식] : 수혜기업 신청서
3. [별지 제3호 서식] : 수혜기업 사업수행계획서
4. [별지 제4호 서식] : 서비스 제공기업 신청서
5. [별지 제5호 서식] : 기업(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6. [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7. [별지 제7호 서식] : 수혜기업 선정 평가표
8. [별지 제8호 서식] : 서비스 제공기업 선정 평가표
9. [별지 제9호 서식] : 수혜기업 성과 평가표 *추후 성과평가 기준 공지 예정
10. [별지 제10호 서식] : 서비스 제공기업 성과 평가표 *추후 성과평가 기준 공지 예정
11. [별지 제11호 서식] : 사업 추진 협약서
12. [별지 제12호 서식] : 사업수행 표준 계약서

【별지 제1호】 여행업 관련 법령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상기 해당 업종에 한하여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참여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수혜기업 신청서 (체험형)

접수번호			
2021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신청서(체험형)			
지원 신청 부문	주도형 중복신청 여부 : <input type="checkbox"/> Y / <input type="checkbox"/> N (*체험형/주도형 중복 신청 가능) ※중복 신청시 유형별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각각 제출 필요		
수혜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전체직원 수		관광 관련 업종
	홈페이지	www.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시·도 ()시·군	<input type="checkbox"/> 수도권 / <input type="checkbox"/> 비수도권
		상세주소 :	설립일 :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중기업 / <input type="checkbox"/> 소기업 /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기업 실무책임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E-mail
사업 목표	① 기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도입을 통한 사업 목표 (50자 내외로 작성) 예시) 비대면 상품 개발 및 온라인 유통 채널(라이브 커머스 등) 참여를 통한 수익모델 발굴 ②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희망 프로그램 요구사항 작성 (제공기업 대상 제안요청 등 활용) 예시) 모바일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모바일 앱 예약/결제 시스템 구축 등 ③ 희망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기대효과		
신청 프로그램 구분 <i>(신청 프로그램 수 제한 없음)</i>	분야		프로그램
	예시) 고객	고객관리 기반 구축	고객관리(CRM)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예시) 상품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AR/VR 실감형 관광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
불임 1. 사업수행계획서(회사소개서 별첨) 1부 2. 중소기업 확인서 1부 3. 관광사업자등록증(여행업 증빙) 1부 4. 사업자등록증명 1부 5.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1부 8. 기업(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9.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10. 지원금 반납 서약서 1부 관계 법령과 규정,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div>			
기 업 명 : _____ 대 표 자 : _____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은 체험형/주도형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 불가임.
 ※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 유형별(체험형, 주도형)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각각 제출해야함.

【별지 제2호 서식】 수혜기업 신청서 (주도형)

접수번호				
2021 여행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신청서(주도형)				
지원 신청 부문	체험형 중복신청 여부 : <input type="checkbox"/> Y / <input type="checkbox"/> N (*체험형/주도형 중복 신청 가능) ※중복 신청시 유형별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각각 제출 필요			
수혜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전체직원 수		관광 관련 업종	
	홈페이지	www.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시·도 ()시·군	<input type="checkbox"/> 수도권 / <input type="checkbox"/> 비수도권	
		상세주소 :		설립일 :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중기업 / <input type="checkbox"/> 소기업 /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기업 실무책임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E-mail	
사업 목표	① 기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도입을 통한 사업 목표 (50자 내외로 작성) 예시) 비대면 상품 개발 및 온라인 유통 채널(라이브 커머스 등) 참여를 통한 수익모델 발굴 ②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희망 프로그램 요구사항 작성 (제공기업 대상 제안요청 등 활용) 예시) 모바일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모바일 앱 예약/결제 시스템 구축 등 ③ 희망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기대효과			
신청 서비스 구분 <i>(신청 프로그램 수 제한 없음)</i>	분야		프로그램	
	예시) 고객	고객관리 기반 구축	고객관리(CRM)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예시) 상품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AR/VR 실감형 관광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	
붙임 1. 사업수행계획서(회사소개서 별첨) 1부 2. 중소기업 확인서 1부 3. 관광사업자등록증(여행업 증빙) 1부 4. 사업자등록증명 1부 5.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1부 8. 기업(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9.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10. 지원금 반납 서약서 1부 관계 법령과 규정,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기 업 명 : _____ 대 표 자 : _____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div>				

※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은 체험형/주도형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 불가임.
 ※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 유형별(체험형, 주도형)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각각 제출해야함.

【별지 제3호 서식】 수혜기업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 본 자료는 수혜기업 선정평가에 활용되는 자료로 반드시 유형별 지정분량 이내로 작성 요망)				
수혜기업명				
현재 사업 모델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주도형	체험형
사업추진 적합성	목적 부합성	디지털 전환 필요성 및 추진 의지	20점	15점
	사업계획 현실성	사업 운영·관리(일정 및 계획 등)의 적절성 및 실현성	20점	15점
<input type="checkbox"/>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사업 목표 <input type="radio"/> 사업 추진 전략 <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의 현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radio"/> 디지털 전환 지원 분야 및 과제 <input type="radio"/> 사업 추진 계획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주도형	체험형
추진 역량/잠재력	기업 역량	참여 인력 및 전문역량의 효율적 활용 계획	15점	15점
	성장 잠재력	비즈니스, 상품 및 서비스의 신규 창출 가능성 등	15점	15점
<input type="checkbox"/> 기업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기업의 역량 <input type="radio"/> 참여인력 현황 및 역량 <input type="checkbox"/> 성장 잠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사업 활성화 방안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주도형	체험형
기대 효과	효과성	정성적, 정량적(상품개발, 고객 유치 증대 등)의 기대효과	15점	20점
	지속 가능성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향후 사업 운영 계획	15점	20점
<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성과의 정성적, 정량적 기대효과 <input type="checkbox"/> 지속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향후 사업 운영 계획 -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비스 제공기업 신청서

접수번호					
여행업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업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업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홈페이지	www.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시·도 ()시·군		<input type="checkbox"/> 수도권 / <input type="checkbox"/> 비수도권	
		상세주소 :		설립일 : 상시 종업원 수:	
	유형구분	<input type="checkbox"/> 산업계 / <input type="checkbox"/> 학교 /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업구분 (산업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 <input type="checkbox"/> 중기업 / <input type="checkbox"/> 소기업 /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 /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총괄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실무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등록 신청 서비스 (다수 서비스 신청 가능) *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작성	프로그램 구분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 (이하 '프로그램')		지원 대상	
	상품	비대면 랜선여행 상품 기획 및 개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험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도형	
	채널	모바일앱 신규 개발 및 기능 고도화 (예약/결제, 커뮤니티 기능 추가 등)		<input type="checkbox"/> 체험형 <input type="checkbox"/> 주도형	
				<input type="checkbox"/> 체험형 <input type="checkbox"/> 주도형	
기업 기본 정보					
기업 재정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매출액증가율				
	유동자산 (A)				
	유동부채 (B)				
	부채총계 (C)				
	자기자본총계 (D)				
	유동비율 (A/B) %				
	부채비율 (C/D) %				

참여 인력의 전문성 (신청 서비스별로 핵심참여인력이 상이할 경우, 행을 추가하여 각각 기재)	서비스 구분	성명	최종 학위/자격증	총 경력
	신청 서비스 A	사업 총괄 책임자		
		핵심 참여 인력 1		
핵심 참여 인력 2				
수행역량 (신청 서비스별로 수행실적이 상이할 경우, 행을 추가하여 각각 기재)	서비스 구분	해당분야 업력 (년)		
	신청 서비스 A	총 수행 건 수 (건)	수행 건수별 수행실적증명원 별도 제출 필요	
		총 수행 금액 (원)		
수행 내용 (요약)				
인력 현황 및 신규 채용	상근 인력 수 (명)			
	최근 4개월 신규 고용 인원 수 (명)		해당 시 기입	
신용평가등급	신용등급 발급기관			
	등급			
수혜기업의 참여 요청 여부	수혜기업의 요청에 의한 서비스 제공기업 신청 여부 (예 / 아니오)			
불임 1. 적격성 증빙서류 1부 2. 평가항목 증빙서류 1부 3. 홍보자료 1부 관계 법령과 규정,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21 년 월 일</div>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 다수의 프로그램 등록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신청서에 등록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내용 모두 기입 필요 (서비스 제공기업 당 하나의 신청서만을 제출)

[참고]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분야 및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안)
고객	고객관리(CRM) 및 고객경험관리(CEM)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관리(CRM)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SaaS 기반고객경험관리(CEM) 솔루션 도입
	360도 고객 이해 확장을 위한 데이터 역량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데이터(고객, 상품, 콘텐츠, Poi) 등 관리 체계 정비/구축 ▶ 소셜/OTA 리뷰 데이터 등 외부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분석 ▶ 문화관광, 유통소비 등 데이터 구매비 지원 등
상품	디지털 기술 요소 기반 스마트 관광 상품·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VR 실감형 관광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비대면 랜선여행 패키지 기획 및 개발 등 ▶ IoT/Beacon 등의 기술을 활용한 관광객 관광상품 기획 및 개발
	디지털 홍보 마케팅 콘텐츠 기획 및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 및 틱톡 등 영상 플랫폼 송출용 홍보 마케팅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디지털 사이니지 등 공공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
채널	자사 웹페이지 및 모바일앱, SNS 채널 등 구축 및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 기반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개편 (콘텐츠/디자인 개편, 반응형 웹으로의 전환 등) ▶ 모바일앱 신규 개발 및 기능 고도화(예약/결제, 커뮤니티 기능 추가 등) ▶ 스마트스토어, 라이브 커머스 등 신규 채널 확대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온라인 마케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디지털 채널 기반 마케팅 ▶ 디지털 매체 타겟 마케팅 ▶ 검색 엔진 최적화(SEO) 등
기술 및 인프라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도입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챗봇 기반 실시간 고객 응대 시스템 구축 ▶ 기존 On-Premise 기반 ERP 시스템 및 DB의 클라우드 이전 ▶ 소셜 데이터 자동크롤링/수집기 개발 등
운영 및 프로세스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정보관리 디지털 대시보드 개발 ▶ 협업/화상회의/계약관리 등 비대면 업무 시스템 도입 ▶ 로봇틱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 도입 등
디지털 전략 및 리더십	디지털 전환 전략 마스터 플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전략과 연계한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모델 구축 ※ 주도형만 참여 가능하며, 전략 수립 후 전략에 따른 수행과제 1개 이상 실행 필수

※ 상기 프로그램은 수혜기업의 과제 발굴을 위한 대표적 예시이며, 해당 분야와 관계된 사업의 경우 수혜기업 선발 평가 시 반영하여 심사 예정

【별지 제5호 서식】 기업(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한국관광공사 귀중

본인은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금액 등)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제공·조회 목적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한국관광공사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p>제공받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연대보증인 ▶ 한국거래소, 중소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한국관광공사와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p>제공받는 자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연대보증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 한국거래소, 중소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한국관광공사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 한국관광공사와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p>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기타 신용정보(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 한국거래소, 중소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연대보증인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p>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p>	<p>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p>
<p>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p>	<p>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p>
<p>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p>	<p>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한국관광공사에 제공하여, 한국관광공사가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한국관광공사가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

-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한국관광공사와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한국관광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관련 상담, 참여, 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사업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학력, 수상경력 등), 경력요약서(총 경력, 회사명, 부서명, 근속기간, 최종직급, 담당업무), 경력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득실확인서)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조건 등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선택적 정보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제공·조회 목적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창투자회사,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채무 전액상환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한국관광공사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p>제공받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연대보증인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한국관광공사와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p>제공받는 자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연대보증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 한국관광공사와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p>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기타 신용정보(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정보 등, 사업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개인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연대보증인 등 :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p>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p>	<p>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p>
<p>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p>	<p>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p>
<p>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p>	<p>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여부</p>	<p>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한국관광공사에 제공하여, 한국관광공사가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한국관광공사가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기업체명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한국관광공사와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수혜기업 선정 평가표 (체험형)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수혜기업 선정 평가표 (체험형)

접수번호			
수혜기업명		평가일자	20 . .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 유형	주도형 중복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Y / <input type="checkbox"/> N (*체험형/주도형 중복 신청 가능)		
신청 지원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예시) 고객	고객관리 기반 구축	고객관리(CRM)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점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사업추진 적합성	디지털 전환 필요성 및 추진 의지	0	4	8	10	15
	사업 운영의 적절성 및 실현성	0	4	8	10	15
추진역량/잠재력	참여인력 및 전문역량 활용	0	4	8	10	15
	비즈니스, 상품, 서비스 창출 가능성	0	4	8	10	15
기대효과	정성,정량적 기대효과	0	5	10	15	20
	지원을 통한 향후 사업 운영	0	5	10	15	20
합 계						

평가위원 : (서명)

* 평가지표 세부 평점기준은 별도

【별지 제7호 서식】 수혜기업 선정 평가표 (주도형)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수혜기업 선정 평가표 (주도형)

접수번호			
수혜기업명		평가일자	20 . .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 유형	체험형 중복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Y / <input type="checkbox"/> N (*체험형/주도형 중복 신청 가능)		
신청 지원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예시) 고객	고객관리 기반 구축	고객관리(CRM)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점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사업추진 적합성	디지털 전환 필요성 및 추진 의지	0	5	10	15	20
	사업 운영의 적절성 및 실현성	0	5	10	15	20
추진역량/잠재력	참여인력 및 전문역량 활용	0	4	8	10	15
	비즈니스, 상품, 서비스 창출 가능성	0	4	8	10	15
기대효과	정성,정량적 기대효과	0	4	8	10	15
	지원을 통한 향후 사업 운영	0	4	8	10	15
합 계						

평가위원 : (서명)

* 평가지표 세부 평점기준은 별도로 정함

【별지 제8호 서식】 서비스 제공기업 선정 평가표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업 선정 평가표

접수번호							
제공기업명			평가일자	20 . .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 지원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프로그램				
	예시) 고객	고객관리 기반 구축	고객관리(CRM)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점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75)	참여 인력 경력 평가(자격 실무경력)		5	10	15	20	25
	관련 분야 업력		2	4	6	8	10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4	8	12	16	20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		4	8	12	16	20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25)	인력 규모		1	2	3	4	5
	매출액		1	2	3	4	5
	신용평가등급		1	2	3	4	5
	유동비율		1	2	3	4	5
	부채비율		1	2	3	4	5
합 계							

평가위원 : (서명)

* 평가지표 세부 평점기준은 별도로 정함

【별지 제9호 서식】 수혜기업 성과 평가표

* 세부기준 마련 중, 추후 별도 공지 예정

【별지 제10호 서식】 서비스 제공기업 성과 평가표

* 세부기준 마련 중, 추후 별도 공지 예정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 추진협약서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추진 협약서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리기관’과 ‘수혜기업’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주체) 본 협약의 주체는 다음과 같다

관리기관	관리기관 : 한국관광공사 사업자등록번호 : 202-81-50707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수혜기업	수혜기업 : 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주소 : 000000000000000

제3조(지원예산 집행 및 협약 기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분야별 세부지원 프로그램 활용에만 사용하며, 지원 예산 집행은 협약기간 내에 종료한다.

협약기간 : 2021.00.00 ~ 2021.00.00

제4조(협약 금액) 수혜기업은 다음과 같이 지원예산 총액을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협약금액	국고보조금	000,000,000원
-------------	-------	--------------

※ 단 과업수행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수혜기업에서 부담한다.

제5조(성실의 의무)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자금지원(정산) 신청 시 또는 관리기관의 장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지원자금(국고보조금)의 지출내역 등을 거짓 없이 성실하게 제출한다.

제6조(국고보조금의 교부취소 및 환수) 관련 법령 및 운영·관리 기준에 의거 국고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 처분일로부터 영업일 14일 이내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혜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수혜기업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허위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협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공고문 또는 운영·관리 기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5. 운영·관리 기준 또는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6. 운영·관리 기준 또는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자금 집행 또는 집행한 사업비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과 점검·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8. 수혜기업에게 휴·폐업·인수·합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관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9. 기업 부담금(지원예산 초과분, 부가가치세 등) 관리기관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10. 제5조 또는 제6조의 조항을 “수혜기업”이 위반하여 지원 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11.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수혜기업”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협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하고, 법률이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수혜기업 대표 000 협약일 2021.00.00 (인)

관리기관 대표 한국관광공사 사장 000 협약일 2021.00.00 (인)

2021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사업수행 표준계약서

(주) _____ (이하“수혜기업”이라 한다.), _____ (이하 “서비스 제공기업”이라 한다.)는 「2021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휴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본 협약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수혜기업”이 요청하는 00000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업”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계약 쌍방의 역할, 책임, 의무 및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 “수혜기업”의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업”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00000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계약 내용 (제공하는 용역 범위)	
--------------------------	--

② “수혜기업”의 00000 서비스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무범위 및 비용분담에 관해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의 상호 합의 후 추가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계약 기간)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1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가지급 및 검사) ① “서비스 제공기업”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필요한 제2조제1항의 용역 수행 대가를 아래 기재된 방법에 따라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1. 수혜기업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서비스 제공기업에게 계약금으로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입금한다.
2. “서비스 제공기업”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신청한다.
3. “서비스 제공기업”의 국고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계약금액 10%(수혜기업의 부가세 부담분) 입금 확인 증
 - 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부(보험증권가입 시 반영사항 제5조 제4호 참조).
 - 다. (전자)(세금)계산서 1부, 인보이스 1부.
 - 라.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1부.
 - 마. 기타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4. “관리기관”은 관리기관이 확인한 “서비스 제공기업”의 서비스금액 정산 신청에 대해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비스금액을 지급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계약 금액		
	국고보조금	부가세	총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지원금액 초과시)			
총 계			

* 국고보조금에는 VAT미포함, 총 계약금의 부가세는 수혜기업 부담

② “서비스 제공기업”은 추진기간 내에 용역결과물을 “수혜기업”에게 납품하고 용역 수행 결과를 “수혜기업”과 “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소정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최종보고: 2021년 월 일까지(수혜기업과 서비스제공기업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③ “서비스 제공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추진기간 내에 용역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기간 내에 제출된 용역결과물이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수혜기업” 또는 “관리기관”은 용역 수행 대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수혜기업” 또는 “관리기관”이 용역 수행 대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기업”은 거절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결과물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당사자 의무)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은 본 용역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1. “수혜기업”은 “서비스 제공기업”이 본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업관련 자료 및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기업”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수혜기업”의 업무상 기밀(정보 및 기술, 자료 등)에 대하여 계약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수혜기업”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기업”은 제안서에 의거, 성실하게 작성된 용역결과물을 “수혜기업” 및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기업은” 계약 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가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가입해야 한다.
 - 가. 피보험자는 수혜기업으로 설정한다.
 - 나. 보험가입금액은 계약 금액에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10%로 설정한다.
 - 다. 보험가입기간은 서비스 계약기간에 90일을 가산한다.
 - 라. 서비스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보험가입기간이 동 기간만큼 연장된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본 계약 당사자가 제5조 각호의 의무사항을 위반 또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것이 심히 부적절한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 위반 상대방에게 시정을 위한 1차 서면통보를 하고 상당한 시간 내에 조속히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수혜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은 경우
2. 경매,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3. 당좌거래의 부도처분을 받아 지불정지 상태로 된 경우
4. 전쟁, 화재, 홍수, 지진, 폭풍 등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인해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수혜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기업”의 상호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사업수행 간 발생한 해지비용에 대한 사항은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관리 기준에 따른다.

④ 계약해지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리기관”에 계약해지 사실을 “수혜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기업” 일방이 공문으로 통보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기업”은 기 지급받은 서비스 금액을 공문 통보 후 2주 이내에 “관리기관”에 반환한다.

제7조(손해배상) 제5조 각호의 계약당사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일방 당사자의 손해는 타방 당사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계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하고 법률에 없을 때 상호 합의에 의한다.

제9조(재판관할) 이 계약의 관할은 “수혜기업”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은 이 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하고, 1부는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제10조(기타)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이중계약, 기업분담금 리베이트, 서비스 금액 유용, 기타 허위 및 부정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리기관”으로부터 지원 취소, 기 지급된 서비스금액 환수, 신규 참여 제한, 법적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년 월 일

(수혜기업) 사업자번호 :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서비스 제공기업) 사업자번호 :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관리기관) 한국관광공사 사장 000

직인생략